

1. 개정이유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에도 호텔업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호텔 관계자가 장시간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나,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에 한하여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태 장기화 시 평가 재개가 불가피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에서도 정상적인 평가 준비가 어려우며, 투숙객이 감소하여 서비스 질 평가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는데에도 애로가 존재하므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정보 해제시까지 등급결정 통보 기간 및 기존에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동 정보 해제 시까지 등급결정 통지 기간 연장(안 제25조제2항)

나. 감염병 확산으로 등급결정 통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3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가요원 해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제2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각호에 따라 등급결정 통지 기간이 연장된 경우, 기존 등급결정은 새로운 등급 부여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생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 -----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 ----- --.
<신설>	1. 평가요원 해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설>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
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등) ① -----

다만, 제25조제2항 각호
에 따라 등급결정 통지 기간이
연장된 경우, 기존 등급결정은
새로운 등급 부여 시까지 유효
한 것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